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548호
----------	---------

제출년월일 2024. 11. .
제출자 유영숙, 한종우 의원

1.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견인 소요 비용을 신설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현행법과 불일치한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여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정비

- 조례 제명 변경(“자동차” → “차”)
- 띄어쓰기 및 상위법 용어 일치를 위해 용어 변경 (안 제1조 ~ 제3조)

나. 구분 차량 명칭 수정 및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견인료 신설(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협의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11. . ~ 2024. 11. .

나) 예고결과 :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24. 6. . ~ 2024. 8. .

나) 협의결과 :

3) 관련부서 : 교통과, 도로관리과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를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로, “자동차의”를 “차의”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으로, “자동차의”를 “차의”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차량	구분	견인료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km증가시)
승용자동차		35,000원	1,000원
승합자동차		40,000원	1,4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60,000원	2,500원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15,000원	없음

별표 제2호 중 “한다”를 “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는 적용 제외)”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u> <u>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u> <u>조례</u></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도로교통법 시행령</u>」 제15조에 따른 주차위반 <u>자동차의</u> 이동·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소요비용) ① 「<u>도로교통법 시행령</u>」 제15조 제3항에 따른 주차위반 <u>자동차의</u>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p> <p>② (생 략)</p>	<p><u>김포시 주차위반 차의</u> <u>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u> <u>조례</u></p> <p>제1조(목적) ----- 「<u>도로교통법 시행령</u>」 제15조----- ----- <u>차의</u> ----- ----- -----.</p> <p>제2조(소요비용) ① 「<u>도로교통법 시행령</u>」 제15조제3항----- ----- <u>차의</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제2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구분 대상차량	견 인 료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km증가시)
2.5톤 미만	35,000원	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40,000원	1,400원
6.5톤 이상	60,000원	2,500원

2. 보관요금

○ 「김포시 주차장 조례」 제5조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1급지)에 준하여 부과하고 30 만원을 한도로 한다.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제2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구분 대상차량	견 인 료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km증가시)
승용자동차	35,000원	1,000원
승합자동차	40,000원	1,4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60,000원	2,500원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15,000원	없음

2. 보관요금

○ -----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는 적용 제
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8. 27.>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 류	경 형		소 형	중 형	대 형
	초 소 형	일 반 형			
승용 자동 차	배기량이 250시 시(전기자동차 의 경우 최고정 격출력이 15킬 로와트) 이하이 고, 길이 3.6미 터·너비 1.5미 터·높이 2.0미 터 이하인 것	배 기 량 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 이 3.6미 터·너 비 1.6미터·높 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 기 량 이 1,600시시 미만이고, 길 이 4.7미 터·너 비 1.7미터·높 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 기 량 이 1,600시시 이상 2,000 시시 미만 이거나, 길이· 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 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 기 량 이 2,000시시 이 상이거나, 길 이·너비·높 이 모두 소형 을 초과하는 것
승합 자동 차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 이하 이고, 길이 4.7 미터·너비 1.7미터·높 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 이거나, 길이· 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 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 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 이상 이거나, 길이· 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 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물 자동 차	배기량이 250시 시(전기자동차 의 경우 최고정 격출력이 15킬 로와트) 이하이 고, 길이 3.6미 터·너비 1.5미 터·높이 2.0미 터 이하인 것	배 기 량 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 이 3.6미 터·너 비 1.6미터·높 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 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 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 톤 미만 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 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 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 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 · 너비1.6미터 ·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 중 량 이 3.5톤 이하 인 것	총 중 량 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 톤 이상인 것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50cc 미만(최고정 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 기 량 이 100cc 이 하(최고정격 출력 11킬로 와트 이하)인 것	배 기 량 이 100cc 초 과 260cc 이하(최고정 격출력 11킬 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 기 량 이 260cc(최 고 정 격 출 력 15킬로와트) 를 초과하는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종 류	유 형 별	세 부 기 준
승 용 자 동 차	일 반 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 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 목 적 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 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 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 타 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 자동차인 것
승 합 자 동 차	일 반 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 수 형	특정한 용도(장의 · 헌혈 · 구급 · 보도 · 캠핑 등)를 가진 것
화 물 자 동 차	일 반 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 프 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 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벤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 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용도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용도용인 것
이륜 자동차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초소형화물차 및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칸막이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나.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 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나.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다.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은 구동전동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다.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주차위반 자동차의 이동·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제2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대상차량 구분	견 인 료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km증가시)
2.5톤 미만	35,000원	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40,000원	1,400원
6.5톤 이상	60,000원	2,500원

2. 보관요금

- 「김포시 주차장 조례」 제5조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1급지)에 준하여 부과하고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3. 공고비용 : 해당 차량의 매각, 폐차를 위해 공고에 든 비용

(별지서식)

소요비용납부고지서				납 부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	주소			납 부 의무자	주소			납 부 의무자	주소			납 부 의무자	주소			납 부 의무자	성명		
견 인	일시			견 인	일시			견 인	일시			견 인	장소			견 인	장소		
소요비용		견인료		보관료		소요비용		견인료		보관료		소요비용		견인료		보관료			
내 역		원		원		내 역		원		원		내 역		원		원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금액		원	
납부금액		원		납부금액		원		납부금액		원		납부금액		원		원		원	
부과근거 :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김 포 시 장 귀하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